

###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유의 사항

-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 제출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시행령 제57조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8-5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 주 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 유의 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 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

### 8-6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8-7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지원 내용

감면 대상	감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li> <li>-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li> <li>-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법인세의 5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sup>6)</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과세 적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li> <li>-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li> </ul>

6)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받은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유의 사항

- 농업인이 농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8-8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지원 대상

-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sup>7)</sup>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sup>8)</sup>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sup>9)</sup>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9)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8-9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sup>10)</sup>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되는 부동산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sup>11)</sup>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sup>12)</sup>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2)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www.smba.go.kr](http://www.smb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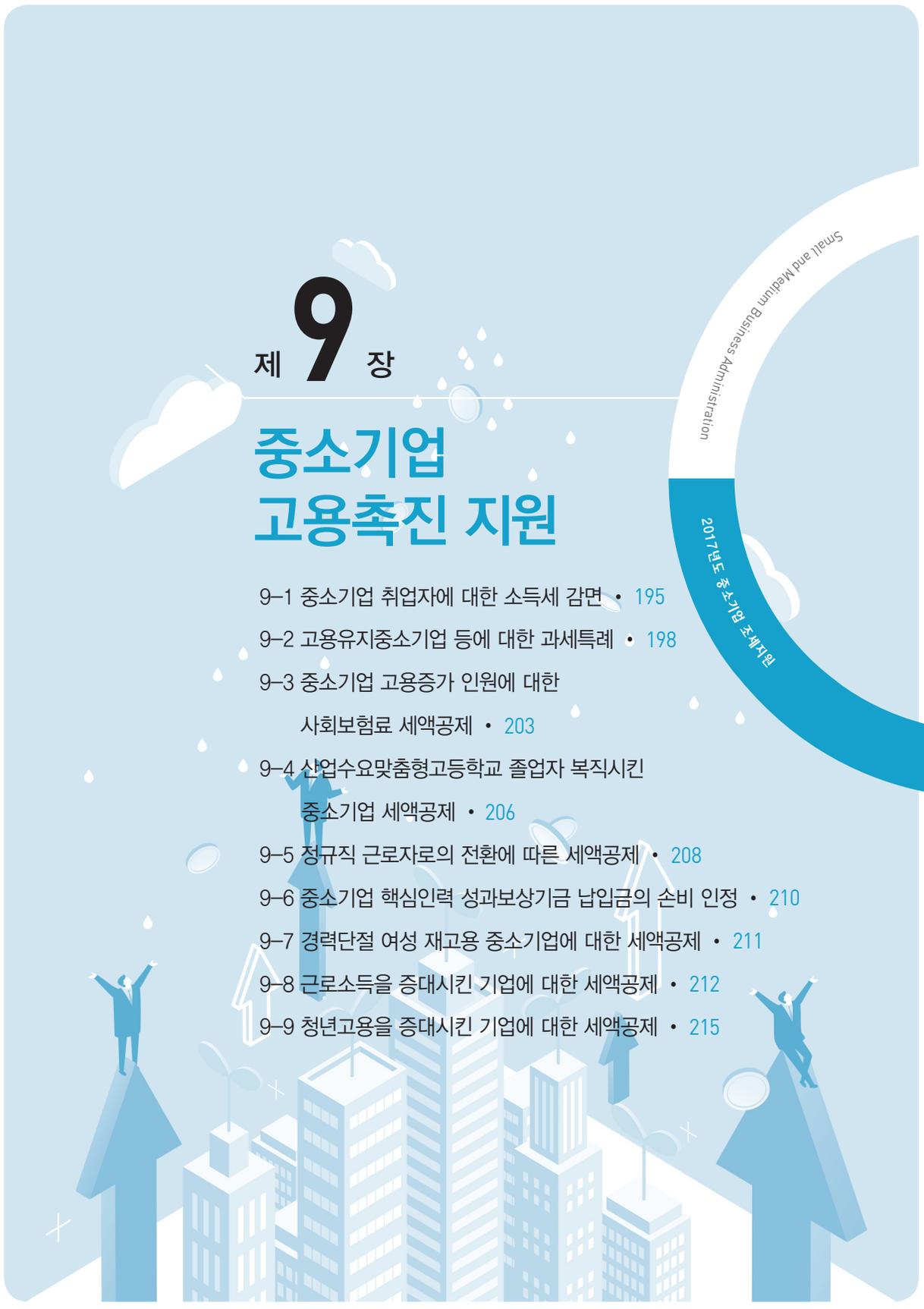
# 제 9 장

##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95
-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8
-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3
-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206
-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08
-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 • 210
-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1
-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2
- 9-9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진흥정책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 9-1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 70% 감면

###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업종	비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리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할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할 날이 최초 취업일부(3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5년)가 되는 날까지 감면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61조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0대 청년인 나직원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효심이 깊은 나직원은 환급액을 어머니의 휠체어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나직원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 어머니에게 휠체어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 세무사 답변

☞ “나직원님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 기업체에 해당 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기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sup>1)</sup>

1) 원천세과-307 2012.06.01.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9-2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 지원 대상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50%
-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50%

-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올해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로 인해 절세되는 세액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 보내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매출액	1,000,000,000	850,000,000
상시근로자수	5	7
1인당 임금총액	18,000,000	16,000,000
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14,000	18,000
소득금액	100,000,000	85,000,000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7,000	7,500



### 세무사 답변

- ☞ “소득공제 및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공제액은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17년 소득공제액 : ①+② = 8,350,000  
 ① :  $(18,000,000 - 16,000,000) \times 7 \times 50\% = 7,000,000$   
 ② :  $(7,500 - 7,000 \times 105\%) \times 18,000 \times 50\% = 1,350,000$   
 2017년 납부할 세액 :  $(85,000,000 - 8,350,000) \times 10\% = 7,665,000$   
 2017년 절감세액 :  $8,500,000 - 7,665,000 = 835,000$

<작성요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015.03.13 개정)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b>소득공제조정명세서</b>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소득공제 계산내역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 항	③ 코드	④ 계산 기준 금액	⑤ 계 산 기준 금액	⑥ 공제율	⑦ 소득공제 대상금액	⑧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⑨ 소득공제액 (⑥ - ⑧)
조세특례제한법	⑩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제55조의2 제4항	460	해당 소득 금액	50/100			
	⑪ 주택 임대소득 공제 (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 제5항	463	해당 소득 금액	50/100 (‘13.1.1이후 100/100)			
	⑫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30조의3	462	임금 삭감액	14,000,000	8,350,000		8,350,000
	⑬ 계 (⑩ ~ ⑪)		459			8,350,000		8,350,000
⑭ 합 계 (⑩ + ⑪)		499				*	8,350,00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의4서식](2014.3.14 개정)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 )	
	② 과세연도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③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⑨-⑫)×⑪×50%, ⑥≤1,000만원]		7,000,000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90,000,000	5	18,000,00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112,000,000	7	16,000,000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나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에 따라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그리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답변**

- ☞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sup>2)</sup>
- ☞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sup>3)</sup>

2) 원천세과-71 201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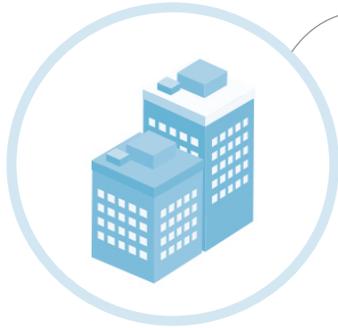
3) 원천-250, 2009.03.27, 원천세과-71 2010.1.22.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9-3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사회보험료의 100%  
이 외 : 사회보험료의 50%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 사회보험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개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신고하려고 하며,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세무사 답변

☞ “세액공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니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 나사장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사장은 이월공제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지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sup>4)</sup>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sup>5)</sup>

사례에서 나사장은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시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된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야 합니다.

☞ 최저한세에 의한 이월공제액 확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sup>6)</sup>

위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sup>7)</sup>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6항 내용 수정

5) 조세특례제한법, 서면법규과-599, 2014.06.17.

6) 조세특례제한법 144조

7) 법인세과-712, 2012.11.2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인건비 X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지원 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지원 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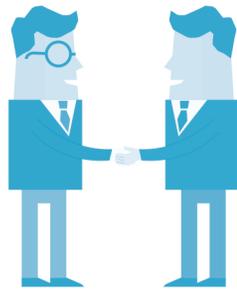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

9-5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X 200만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지원 대상

-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중소기업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적용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2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 세액 감면

###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③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⑤ ① ~ 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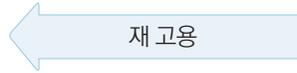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

9-7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공제



경력단절 여성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원 대상

- 경력단절 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1.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출산·육아·임신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하였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9-8

중소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 내용

-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특례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대통령령으로 정한비율)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②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사후 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26조의4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일정한 요건에 따라 ①과 ② 중 선택</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p>②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li> </ul>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근로자를 증가시킨기업

9-9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직전 과세연도,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X 500만원(200만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 내용

-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500만원(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공제인적한도** = Min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부칙: 법률 제13560호, 12조에 따라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년부터 적용할 것

\*\* 중견기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세액공제 대상자

-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③ 임원
  -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⑥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청소년유해업종)에 따른 업종에 고용된 청소년(19세 미만) 근로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매월말 현재 15 ~ 29세인 정규직 근로자
-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③ 임원
  -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근로자수 계산방법

$$\text{근로자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근로자수의 합}}{\text{해당기간의 개월수}}$$



## 사후 관리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시 다음 중 가장 큰 인원에 500만원(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추징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3.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제 10 장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0-1 가업상속공제 • 221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 233

10-3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3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





# 사업상속공제

사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10-1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기액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을 상속 하는 경우

### 피상속인 요건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0년 또는 사업경영 기간의 50% 이상 대표자로 재직



###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2년 이상 사업에 종사
-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 지원 요건

- 상속사업 요건<sup>1)</sup>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 지분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자 요건 : 피상속인이 총 사업 영위기간의 50% 또는 10년,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 등으로 재직
- 상속인 요건<sup>2)</sup>
  -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사업에 종사<sup>3)</sup>
  -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1)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사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2)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3)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 [별표]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해당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전체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전업 (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전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부동산업 및 임대(68~6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해당업종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하.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사회복지서비스업(87)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해당업종	관련법령	세 부 사 항
가. 직업기술학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1호커목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나. 엔지니어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 활동, ㉡㉢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활동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다.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바. 선박관리업	해운법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
사. 의료기관운영업	의료법	㉠의원급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함.